##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6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김성회・박지원・한정애

추미애 • 박지혜 • 정혜경

염태영 · 송옥주 · 맹성규

한병도 · 강선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 및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	5
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	
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	
탄소(CO2), 메탄(CH4), 아산	
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u>육불화황(SF6)</u> 및 그 밖에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u>F3)</u>
말한다.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